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9. 7 선고 2023가단2128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단체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

담당변호사 김진모, 하동규

피고B

변론 종결2023. 8. 17.

판결 선고2023. 9. 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8.3분의 28.0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49.36분의 43.5 지분에 관하여 2022. 4. 22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8.3분의 28.0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49.36분의 43.5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. 4. 25. 접수 제484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인진섭

별지